

의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 246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2. 2. 5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이 19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명칭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변경 (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→서초구이동도서관)
- 위탁관리체제하의 불합리한 조항 수정·삭제 등

2. 검토결과

□ 본 조례는

1994. 12. 2. 서초구 조례 제265호로 공포설치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 중앙회지부에 위탁운영되어 오던중 1999. 4. 1. 이후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

□ 주요내용은

- 조례안의 제명과 8개조문중 제1조내지 제7조까지 관련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임.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, 이동도서관이 위탁운영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므로,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- 다만 조례안 제1조중 “위탁운영” 을 “운영” 으로 수정하고, 안 제5조 제1항중 “일반회계보조금과” 를 “일반회계와” 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참고사항으로 현재 이동도서관은 도서 총51,785권을 보유하고 5명의 인력 및 차량 2대로 매일 오전 오후 2회 주5일 순회 대출하고 있으며, 2001년도 연간 150,196권 1일 평균 703권을 대출하고, 1일 평균 이용자 141명에 이르고 있음.